

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

년 월 일

본인 (채무자)	성명	안 / 서명	생년월일 (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)						
-------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 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과 이 약정서의 사본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 제1조의 거래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(한도거래의 경우 관련예금거래약관을 포함합니다)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.

제1조 거래 조건

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(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"□"에 "V"로 표시합니다.)

대출과목	거래구분	□ 개별거래 □ 한도거래	지연배상금율	□ 대출금리+연체가산금리(연 3%) ※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의 고액적용금리입니다. ※ 지연배상금율은 최대 연 15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□ 기타:()										
대출(한도)금액	금	원정	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이자율은(□일 단위, □월 단위)로 계산하며, 지연배상금율은 일단위로 계산하되, 일단위는 365일(윤년은 366일)로, 월단위는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										
대출개시일	□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합니다.		중도상환수수료	약정한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(이하 "중도상환"이라 합니다)하는 경우 본인은 은행에 다음과 같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. 중도상환수수료=중도상환금액×중도상환수수율×대출잔여일수/대출기간(일수) 중도상환수수율: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: 상환금액의 ()% ※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, 대출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며,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□ 해당없음										
상환기일	□ 년 월 일까지 □ 대출개시일로부터 ()년 ()개월													
대출	□ 변동[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제3조제2항제2호 선택] □ 3개월CD금리 + 연 ()% □ COFX (자금조달비용지수) + 연 ()% □ () 금융채 유통수익률 + 연 ()% ※ 3개월CD금리 기준인 경우는 매3개월마다 변동되며, COFX는 매()개월마다, () 금융채유통수익률 기준인 경우는 매()개월마다 변동됩니다. ※ COFX는 대출실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중, □신규취급액기준, □잔액기준, □단기, □신잔액기준을 적용합니다. □ 고정[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제3조제2항제1호 선택] □ () 금융채 유통수익률 + 연 ()% □ 여신기간 끝날때까지 연 ()% □ 기타 ()		대출실행방법	□ 대출실행일에 전액 실행합니다. □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. □ 본인이 신청한 자동이체거래만 실행되며, 다음 각호의 업무는 실행되지 않습니다. 1. 다른은행계좌이체, 다른은행신용카드대금결제, 다른은행대출 원금과 이자 결제, 당행요구불계좌간이체 2. 영업점, 텔레뱅킹, 인터넷뱅킹, 모바일, CD/ATM업무 □ 기타()										
	□ 고객가산금리 중 우대금리													
	<table><tr><td>☒ 급여이체 연()%</td><td>☐ 우량/전문직 고객 연()%</td></tr><tr><td>☒ 카드사용 연()%</td><td>☐ 원리균등 연()%</td></tr><tr><td>☐ 서민지원 연()%</td><td>☐ 1금융권 부채통합 연()%</td></tr><tr><td>☐ COFX 연()%</td><td>☐ 본부우대 전결 연()%</td></tr><tr><td>☐ 고정금리 연()%</td><td>☐ () 연()%</td></tr></table>				☒ 급여이체 연()%	☐ 우량/전문직 고객 연()%	☒ 카드사용 연()%	☐ 원리균등 연()%	☐ 서민지원 연()%	☐ 1금융권 부채통합 연()%	☐ COFX 연()%	☐ 본부우대 전결 연()%	☐ 고정금리 연()%	☐ () 연()%
	☒ 급여이체 연()%	☐ 우량/전문직 고객 연()%												
☒ 카드사용 연()%	☐ 원리균등 연()%													
☐ 서민지원 연()%	☐ 1금융권 부채통합 연()%													
☐ COFX 연()%	☐ 본부우대 전결 연()%													
☐ 고정금리 연()%	☐ () 연()%													
※ 우대금리는 대출만기일까지 적용합니다. 단, 실적이 연동되는 우대금리는 별도약정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		
대출이자율	□ 한도대출 사용율에 따른 우대이자율		상환방법에 따른 이자지급 시기및방법	□ 대출거래 기간 중에 자유로이 상환하되 상환기일에 전액 상환하며 이자는 매월 (□ 첫번째, □ 세번째) 토요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. ※ 한도거래대출의 이자계산방법은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중 최고잔액이 개시 및 마감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최고잔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그러나 연체계좌에 대하여는 매일의 마감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. □ 상환기일에 전액 상환하고 최초이자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,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, 최종이자자는 상환기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. □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(□ 원금 □ 원금과 이자)균등 분할 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. □ 대출 실행일로부터 ()년 ()개월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동안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. 잔여기간()년 ()개월 동안 매 1개월마다 (□ 원금 □ 원금과 이자)균등 분할 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 하기로 합니다. ※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<table><tr><td>한도사용율</td><td>40%초과~60%이하</td><td>60%초과~80%이하</td><td>80%초과</td></tr><tr><td>우대이자율</td><td>연 %</td><td>연 %</td><td>연 %</td></tr></table> -대출이자율에서 매일의 한도사용율에 따른 우대이자율을 차감하여 이자를 계산하며, 연체시에는 우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※ 한도사용율 = 매일의 개시잔액 ÷ 대출한도 □ 새희망홀씨2 대출 성실상환 우대이자율(최대 4회 이내) 매년 연체누적일수 5일 이내인 경우 ()%씩 감면 매년 연체누적일수 10일 이내인 경우 ()%씩 감면 만기일시 또는 한도거래인 경우 대출기간 연장시점에서 은행이 재산출한 금리를 적용하며, 재산출한 금리가 연장전 금리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.		한도사용율			40%초과~60%이하	60%초과~80%이하	80%초과	우대이자율	연 %	연 %	연 %			
한도사용율	40%초과~60%이하	60%초과~80%이하	80%초과											
우대이자율	연 %	연 %	연 %											

제2조 대출금의 실행

- ① 이 약정에 의한 개별대출은 은행이 제1조의 대출(한도)금액에서 인지대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채무자가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.
② 이 약정에 의한 한도대출은 은행이 제1조의 대출(한도)금액이 설정되고 인지대 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에서 통장/인감(또는 서명)/비밀번호없이 출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.
③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
- ④ 제2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

제3조 지연배상금

- ① 이자, 분할상환원금과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제1조의 거래조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

- ② 상환하기 또는 거래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게용) 제7조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독촉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제13호의 거래조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③ 한도거래의 경우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한도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제1항의 이자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※ 기한의 이익: 미리 정한 기간동안 금사자가 누리는 이익

제 4 호 이자율의 변경 및 이자지급 방법

- ① 채무자가 제2에서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 은행은 대출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② 채무자가 제2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
- 3개월CD금리란 대출실행일(이자변경일 포함)전 10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고시하는 9월말 CD유통 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을 말하며, 매 3개월마다 변동됩니다.
 - 금융채(금융채(은행채무보증 AAA)유통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됩니다.
 - COFX(자금조달비용지수) 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(이자변동일 포함) 전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자금조달지수 중 제2호 거래조건에 대출이자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변동 주기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③ 채무자가 제2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은행이 제2에서 정하는 이자등의 율을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채무자가 동 기2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채무자가 본 항에 따라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는 변경전의 이자율에 의하여 곧 채무전액을 상환하기로 하고,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.

제 5 호 중도상환수수료

- ① 채무자가 제2에 의한 대출금 상환기일 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호의 거래조건에 따라 상환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-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법적조치(경매, 소송 등)를 통해 대출금을 기일 이전에 회수하는 경우.
 -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게용) 제10호(은행으로부터의 상계)의 사유로 예금과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하는 경우.
 - 채무자 사망에 따른 대위변제의 경우
- ※ 대위변제: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

제 6 호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게용) 제7호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독촉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

제 7 호 한도변경 및 사용제한(한도거래인 경우)

- ①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(한도)금액에 불구하고 대출(한도)금액을 감액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단, 은행이 정한 자동이체지급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 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: 대위변제 대지급정보: 부도정보: 관련연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
 -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게용) 제 7조에 의하여 대출금의 기한의이익을 상실한 경우.
 - 은행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(한도)금액에 불구하고 미사용 한도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정보업자(신용정보업자) 합은 신용정보회보를 영위할 목적으로 "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"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)로부터 당행 및 타금융기관에서 30일 이상의 연체정보가 확인되는 경우
 - 개인신상, 신용회복지원 또는 사전재무조정(프리워크아웃)의 신청이 있는 경우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은행이 대출(한도)금액을 감액했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결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사용제한을 풀기로 합니다.
- ⑥ 한도증액또는감액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.
- ※ 대지급: 채무자가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(또는 정부)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

■ 대출금 입금, 자동이체 신청 및 무통장 · 무인감 출금 동의

본인은 아래에 기재된 계좌를 대출금 입금(한도거래의 경우 한도대출계좌) 및 상환(자동이체)계좌로 신청합니다. 본인은 자동이체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, 대출실행일에 본인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에서 관련 비용을 출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채무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.

• 금융기관명: _____ • 계좌번호 : _____

■ 자동이체 거래약관

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약

- 자동이체일(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)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에서 청구하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본인의 지정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합니다.
- 은행은 자동이체 신청서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, 수표,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출금합니다.
- 납입일에 이체대상이 여러건이 있을 경우, 계좌간 자동이체약관에 따릅니다.
 - ※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확인경로: 은행홈페이지 - 상품공시실 - 예금 -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
-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은행 청구대로 출금하되 출금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은행과 직접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.
- 자동이체계좌의 지급제한 등으로 출금이 불가할 경우 상환처리가 되지 않으며,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른기관(서울보증보험, 서민금융진흥원등)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경우, 자동이체의 예금잔액이 이체일 현재 납입할 총액에 미달할 경우 상환처리 되지 않으며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,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합니다.
- 본인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래는 다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 2영업일 전까지 은행에 서면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관련예금약관, 신탁약관, 계좌간 자동이체거래약관을 준용합니다.

※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합니다.

- 본인은 상기 기재 내용과 같이 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 각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, 만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귀 은행이 대출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- 본인이 신청한 대출이자율은 실행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.
- 본인이 신청한 대출금액 및 대출이자율에 대해, 심사과정에서 대출금리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본인이 귀 은행에게 팩스로 보낸 "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변경동의서"는 원본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이 약정서 작성 후 주소,전화번호, 기타 위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, 귀 은행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 하겠습니다.
- 본인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귀 은행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.
- 이 약정서의 전수가 대출의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개별심사결과에 따른 대출 여부 결정의 권한은 전적으로 은행에 있습니다.
- 본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변동금리 대출은 상황을 안료할 때까지 기준금리 변경에 따라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,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경우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

충 분 히 설 명 들 고 이 해 하 였 음 을 확인합니다.

- 상품설명서,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**제 공 받 았 으 며** , 내용에 대해 **충 분 히 설 명 들 고 이 해 하 였 음** 을 확인합니다.

-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게용)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**확 실 히 수 령 하 고** , **주 요 내 용 에 대 하 여 설 명 을 들 고 이 해 하 였 음** 을 확인합니다.

성명

인 / 서명

본 인 확 인			
소 속	직 위	성 명	인

상담자 직위: 성명: 인

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

년 월 일

본인 (채무자)	성명	안 / 서명	생년월일 (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)						
-------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 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과 이 약정서의 사본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과 제1조의 거래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(한도거래의 경우 관련예금거래약관을 포함합니다)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.

제1조 거래 조건

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(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"□"에 "V"로 표시합니다.)

대출과목	거래구분	□ 개별거래 □ 한도거래	지연배상금율	□대출금리+연체가산금리(연 3%) ※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의 고액적용금리입니다. ※ 지연배상금율은 최대 연 15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□ 기타:()										
대출(한도)금액	금	원정	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이자율은(□일 단위, □월 단위)로 계산하며, 지연배상금율은 일단위로 계산하되, 일단위는 365일(윤년은 366일)로, 월단위는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										
대출개시일	□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합니다.		중도상환수수료	약정한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(이하 "중도상환"이라 합니다)하는 경우 본인은 은행에 다음과 같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. 중도상환수수료=중도상환금액×중도상환수수율×대출잔여일수/대출기간(일수) 중도상환수수율: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: 상환금액의 ()% ※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, 대출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며,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. □ 해당없음										
상환기일	□ 년 월 일까지 □ 대출개시일로부터 ()년 ()개월													
대출이자율	□ 변동[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제3조제2항제2호 선택] □ 3개월CD금리 + 연 ()% □ COFX (자금조달비용지수) + 연 ()% □ () 금융채 유통수익률 + 연 ()% ※ 3개월CD금리 기준인 경우는 매3개월마다 변동되며, COFX는 매()개월마다, () 금융채유통수익률 기준인 경우는 매()개월마다 변동됩니다. ※ COFX는 대출실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중, □신규취급액기준, □잔액기준, □단기, □신잔액기준을 적용합니다. □ 고정[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제3조제2항제1호 선택] □ () 금융채 유통수익률 + 연 ()% □ 여신기간 끝날때까지 연 ()% □ 기타 ()		대출실행방법	□ 대출실행일에 전액 실행합니다. □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. □ 본인이 신청한 자동이체거래만 실행되며, 다음 각호의 업무는 실행되지 않습니다. 1. 다른은행계좌이체, 다른은행신용카드대금결제, 다른은행대출 원금과 이자 결제, 당행요구불계좌간이체 2. 영업점, 텔레뱅킹, 인터넷뱅킹, 모바일, CD/ATM업무 □ 기타()										
	□ 고객가산금리 중 우대금리													
	<table><tr><td>☒ 급여이체 연()%</td><td>☐ 우량/전문직 고객 연()%</td></tr><tr><td>☒ 카드사용 연()%</td><td>☐ 원리균등 연()%</td></tr><tr><td>☐ 서민지원 연()%</td><td>☐ 1금융권 부채통합 연()%</td></tr><tr><td>☐ COFX 연()%</td><td>☐ 본부우대 전결 연()%</td></tr><tr><td>☐ 고정금리 연()%</td><td>☐ () 연()%</td></tr></table>				☒ 급여이체 연()%	☐ 우량/전문직 고객 연()%	☒ 카드사용 연()%	☐ 원리균등 연()%	☐ 서민지원 연()%	☐ 1금융권 부채통합 연()%	☐ COFX 연()%	☐ 본부우대 전결 연()%	☐ 고정금리 연()%	☐ () 연()%
	☒ 급여이체 연()%	☐ 우량/전문직 고객 연()%												
	☒ 카드사용 연()%	☐ 원리균등 연()%												
☐ 서민지원 연()%	☐ 1금융권 부채통합 연()%													
☐ COFX 연()%	☐ 본부우대 전결 연()%													
☐ 고정금리 연()%	☐ () 연()%													
※ 우대금리는 대출만기일까지 적용합니다. 단, 실적이 연동되는 우대금리는 별도약정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		
□ 한도대출 사용율에 따른 우대이자율														
<table><tr><td>한도사용율</td><td>40%초과~60%이하</td><td>60%초과~80%이하</td><td>80%초과</td></tr><tr><td>우대이자율</td><td>연 %</td><td>연 %</td><td>연 %</td></tr></table> -대출이자율에서 매일의 한도사용율에 따른 우대이자율을 차감하여 이자를 계산하며, 연체시에는 우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※ 한도사용율 = 매일의 개시잔액 ÷ 대출한도 □ 새희망홀씨2 대출 성실상환 우대이자율(최대 4회 이내) 매년 연체누적일수 5일 이내인 경우 ()%씩 감면 매년 연체누적일수 10일 이내인 경우 ()%씩 감면 만기일시 또는 한도거래인 경우 대출기간 연장시점에서 은행이 재산출한 금리를 적용하며, 재산출한 금리가 연장전 금리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.		한도사용율	40%초과~60%이하	60%초과~80%이하	80%초과	우대이자율	연 %	연 %	연 %	상환방법에 따른 이자지급 시기및방법	□ 대출거래 기간 중에 자유로이 상환하되 상환기일에 전액 상환하며 이자는 매일 (□ 첫번째, □ 세번째) 토요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. ※ 한도거래대출의 이자계산방법은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 중 최고잔액이 개시 및 마감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최고잔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그러나 연체계좌에 대하여는 매일의 마감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. □ 상환기일에 전액 상환하고 최초이자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,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, 최종이자자는 상환기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. □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(□ 원금 □ 원금과 이자)균등 분할 상환하고 매일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. □ 대출 실행일로부터 ()년 ()개월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동안 매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. 잔여기간()년 ()개월 동안 매 1개월마다 (□ 원금 □ 원금과 이자)균등 분할 상환하고 매일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 하기로 합니다. ※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
한도사용율	40%초과~60%이하	60%초과~80%이하	80%초과											
우대이자율	연 %	연 %	연 %											

제2조 대출금의 실행

- ① 이 약정에 의한 개별대출은 은행이 제1조의 대출(한도)금액에서 인지대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채무자가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.
② 이 약정에 의한 한도대출은 은행이 제1조의 대출(한도)금액이 설정되고 인지대 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에서 통장/인감(또는 서명)/비밀번호없이 출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.
③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
- ④ 제2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계용)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

제3조 지연배상금

- ① 이자, 분할상환원금과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제1조의 거래조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


- ② 상환하기 또는 거래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게용) 제7조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독촉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제13호의 거래조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③ 한도거래의 경우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한도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제1항의 이자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※ 기한의 이익: 미리 정한 기간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

제 4 조 이자율의 변경 및 이자지급 방법

- ① 채무자가 제2에서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 은행은 대출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② 채무자가 제2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
- 3개월CD금리란 대출실행일(이자변동일 포함)전 10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고시하는 9월말 CD유통 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을 말하며, 매 3개월마다 변동됩니다.
 - 금융채(금융채(은행채무보증 AAA)유통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됩니다.
 - COFX(자금조달비용지수) 연대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(이자변동일 포함) 전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국 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자금조달지수 중 제2호 거래조건에 대출이자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변동 주기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③ 채무자가 제2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은행이 제2에서 정하는 이자등의 율을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채무자가 동 기2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채무자가 본 항에 따라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는 변경전의 이자율에 의하여 곧 채무전액을 상환하기로 하고,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.

제 5 조 중도상환수수료

- ① 채무자가 제2에 의한 대출금 상환기일 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조의 거래조건에 따라 산출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-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법적조치(경매, 소송 등)를 통해 대출금을 기일 이전에 회수하는 경우.
 -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게용) 제10조(은행으로부터의 상계)의 사유로 예금과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하는 경우.
 - 채무자 사망에 따른 대위변제의 경우
- ※ 대위변제: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

제 6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게용) 제7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독촉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.

제 7 조 한도변경 및 사용제한(한도거래인 경우)

- ①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(한도)금액에 불구하고 대출(한도)금액을 감액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단, 은행이 정한 자동이체지급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 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: 대위변제 대지급정보: 부도정보: 관련연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채
 -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게용) 제 7조에 의하여 대출금의 기한의이익을 상실한 경우.
 - 은행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(한도)금액에 불구하고 미사용 한도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정보업자(신용정보업자) 합은 신용정보업자를 영위할 목적으로 "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"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)로부터 당행 및 타금융기관에서 30일 이상의 연체정보가 확인되는 경우
 - 개인신상, 신용회복지원 또는 사전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의 신청이 있는 경우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은행이 대출(한도)금액을 감액했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결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사용제한을 풀기로 합니다.
- ⑥ 한도증액또는감액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.
- ※ 대지급: 채무자가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(또는 정부)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

■ 대출금 입금, 자동이체 신청 및 무통장 · 무인감 출금 동의

본인은 아래에 기재된 계좌를 대출금 입금(한도거래의 경우 한도대출계좌) 및 상환(자동이체)계좌로 신청합니다. 본인은 자동이체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, 대출실행일에 본인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에서 관련 비용을 출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채무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.

• 금융기관명: _____ • 계좌번호 : _____

■ 자동이체 거래약관

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양

- 자동이체일(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)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에서 청구하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본인의 지정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합니다.
- 은행은 자동이체 신청서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, 수표,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출금합니다.
- 납입일에 이체대상이 여러건이 있을 경우, 계좌간 자동이체약관에 따릅니다.
 - ※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확인경로: 은행홈페이지 - 상품공시실 - 예금 -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
-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은행 청구대로 출금하되 출금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은행과 직접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.
- 자동이체계좌의 지급제한 등으로 출금이 불가할 경우 상환처리가 되지 않으며,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른기관(서울보증보험, 서민금융진흥원등)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경우, 자동이체의 예금잔액이 이체일 현재 납입할 총액에 미달할 경우 상환처리 되지 않으며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,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합니다.
- 본인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래는 다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 2영업일 전까지 은행에 서면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관련예금약관, 신약약관, 계좌간 자동이체거래약관을 준용합니다.

※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합니다.

- 본인은 상기 기재 내용과 같이 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 각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, 만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귀 은행이 대출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- 본인이 신청한 대출이자율은 실행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.
- 본인이 신청한 대출금액 및 대출이자율에 대해, 심사과정에서 대출금리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본인이 귀 은행에게 팩스로 보낸 "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변경동의서"는 원본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이 약정서 작성 후 주소, 전화번호, 기타 위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, 귀 은행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 하겠습니다.
- 본인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귀 은행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.
- 이 약정서의 전수가 대출의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개별심사결과에 따른 대출 여부 결정의 권한은 전적으로 은행에 있습니다.
- 본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변동금리 대출은 상황을 안료할 때까지 기준금리 변경에 따라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,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경우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

충 분 히 설 명 들 고 이 해 하 였 음 을 확인합니다.

9. 상품설명서,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**제 공 받 았 으 며** , 내용에 대해 **충 분 히 설 명 들 고 이 해 하 였 음** 을 확인합니다.

10.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가게용)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**확 실 히 수 령 하 고** , **주 요 내 용 에 대 하 여 설 명 을 들 고 이 해 하 였 음** 을 확인합니다.

제 8 조 한도거래에 대한 약정

- 한도거래의 경우 한도거래실행계약(이하 "모계좌"라 한다)에 대해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 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등의 자동납부 청구 또는 현금자동지급 카드 등의 사용이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 하는 것으로 합니다.
 -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(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한다.)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.
 -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일부라도 원금에 가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모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.
 - 제3항의 경우 한도초과로 원금에 가산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초과된 다음 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
 - 가계당거래예금을 모계좌로 이용한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.
- ※ 구상채무: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기관 및 타 법인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

제 9 조 자동연장

- 은행의 연기정책에 따라 정한 연기대상자에 대하여 연기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를 전하로 늦춰한 경우에는 연기신청서 등 별도의 약정서를 받지 아니하고 1년내의 단위로 상환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- 제1항에 불구하고 은행은 한도 재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서류 등의 필요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의 만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자율 등의 변경 시에도 계속하여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.
- 한도거래의 경우, 채무자가 대출금을 최종인출한 날(대출실행 이후 전혀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계좌 개설일로부터 9개월 이상 대출금을 인출하지 않거나 한도사용율이 낮은 경우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대출연정을 제한하거나 대출한도를 감액한 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제 10 조 채권의 양도

- 은행은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의 승계인 및 수탁인등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, 은행이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본인은 은행의 대출채권 양도와 관련한 모든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합니다.
- 본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본인의 대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동의합니다.
-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채권양도 통지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본인은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에 통지함으로써 이 대출거래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 11 조 대출계약 철회

- 본인은 계약서류 수령일, 대출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익일부터 14일(이하, "철회기간"이라 한다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통신매체(인터넷, 모바일)로 철회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철회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영업일까지 철회기간으로 산정합니다.
-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 - (근)저당권설정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
 -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지 등 제세공과금
 -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
- 은행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.
- 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-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철회기간 내에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,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
-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 - 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제 12 조 대출실행 중단

은행은 대출계약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중가, 연체발생,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,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제 13 조 기타 특약사항

본 인

인 / 서명

성명

인 / 서명